

2015.6.26.(금)~
7.10.(금)/15일 간

제272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

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■ 목 차

1. 2014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승인의 건	4
2.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	5
3. 2014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	5

심사결과

의 안 명	심사결과
○ 2014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승인의 건	원안가결
○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	원안가결
○ 2014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	원안가결

주 요 내 용

1. 2014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승인의 건

- 제출일자 : 2015. 6. 19.

- 제출자 : 장성군수

-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장성군 세입·세출 결산을 장성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」

- 주요내용

-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

- 예 산 현 액 : 4천 215억 5천 1백만원

- 세입 결산액 : 4천 131억 4천 5백만원

- 세출 결산액 : 2천 949억 5천 6백만원

- 이월금 결산

- 이 월 총 액 : 1천 363억 8천 9백만원

- 명 시 이 월 : 287억 8천 5백만원

- 사 고 이 월 : 391억 4천만원

- 계속비 이월 : 40억 1천 3백만원

- 국·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: 47억 5천만원

- 순세계 잉여금 : 597억 1백만원

- 채권 결산

채권총액 : 49억 1천 1백만원

회계별

일반회계 : 36억 8천 4백만원

특별회계 : 12억 1천 6백만원

사회복지기금 : 1천 2백만원

내역별

보증금채권(전화선예치) : 9백만원

융자금채권(학자금, 주택, 주민소득지원, 영세민생활안정자금) : 45억 3천 8백만원

미수금채권(삼계택지 환지청산금) : 3억 6천 4백만원

- 채무 결산

채무총액 : 145억 1백만원

(전년도 156억 9천 6백만원/ 11억 9천 5백만원 감소)

청사건립 : 10억원 (군비 100%)

쓰레기소각시설 : 5억 6천만원 (군비 100%)

하수슬러지처리 : 1억 7천 4백만원 (국비 100%)

농공단지 조성 : 72억 (수요자 100%)

농어촌뉴타운조성 : 55억 6천 7백만원 입니다. (수요자 100%)

순수 군비부담 채무 : 15억원 6천만원

- 공유재산 결산

공유재산 평가액 : 6천 275억 2백만원

토지 : 2천 103억 9천 4백만원

건물 : 1천 189억 9천 4백만원

입목죽 : 32억 4천 3백만원 (가로수, 관상수, 조림)

공작물 : 2천 871억 1천 3백만원 (도로, 하천부속시설)

기계기구 : 25억 4천 9백만원 (정수장 펌프, 여과기)

무체재산권 : 46억 6천 2백만원 (홍길동 애니메이션)

용익물권 : 3억 9천 4백만원 (전세권)

회 원 권 : 1억 5천 3백만원 (콘도 회원권)

- 물품 결산

정수물품 : 자동차 등 36종 649점

평 가 액 : 47억 8천만원

- 재무회계 결산

총자산 : 2조 858억 9천만원

총부채 : 303억 2천 4백만원

순자산 : 2조 555억 6천 6백만원

- 재정운영 상황

총수익 : 3천 196억 7천 6백만원

총비용 : 2천 266억 5천 7백만원

운영차액 : 930억 1천 9백만원

-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1항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7. 10.)

2.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

- 제출일자 : 2015. 6. 19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」

- 주요내용

- 예비비 결산

- 예산총액 : 209억 3천 9백만원

- 지출총액 : 2억 3천 8백만원

- AI 차단방역 지원사업 : 1억 8천 3백만원

- “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” 화재사고 응급복구 및 구호사업 : 5천 5백만원

-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제1항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7. 10.)

5. 2014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

- 제출일자 : 2015. 6. 19.

- 제출자 : 장성군수

-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 결과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」

- 주요내용

- 기금 결산

- 당해연도 조성액 : 9억 9백만원

- 지출액 : 3억 4천 7백만원

- 2014년 말 현재 조성액 : 59억 5천 7백만원

-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제2항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7. 10.)